

---

2026 KBA 3x3 농구대회  
미디어(SNS) 홍보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1.



## I

## 사업개요

- 과업명: 2026 KBA 3x3 농구대회 미디어(SNS) 홍보 용역
- 과업목적
  -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 활성화와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뉴미디어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으로 3x3 종목에 대한 지속적 관심 증대
  - 온라인 플랫폼에 최적화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채널 성장의 기반 마련
  - 영상 및 SNS 콘텐츠를 통한 3x3종목 홍보 강화 및 팬들과의 소통 활성화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

구분	회차	개최지역	대회일정(안)
KOREA TOUR 2026	1차	서울특별시	2026년 4월 11일 ~ 12일
	2차	강원 고성군	2026년 6월 20일 ~ 21일
	3차	충북 제천시	2026년 9월 12일 ~ 13일
	FINAL	미정	2026년 10월 24일 ~ 25일
KBA 3x3 리그	1~6차	서울 등 수도권 (상세 지역 미정)	2026년 3월 ~ 9월 (1차 당 주말 2일 진행 계획, 총 6주, 12일 진행 예정) 세부일정 미정

※ 개최 일시와 장소는 예정(안)이며, 기상 상황 및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34,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 포함)
- 사업범위

구 분	대 상	명 칭	홈페이지 주소
운영채널	유튜브	코바티비	<a href="https://www.youtube.com/@kobatv1925">https://www.youtube.com/@kobatv1925</a>
	네이버TV	코바티비	<a href="https://tv.naver.com/kobatv1925">https://tv.naver.com/kobatv1925</a>
	인스타그램	3x3kba	<a href="https://www.instagram.com/3x3kba/?gsh=c3Z3bGl4OHkdhR4">https://www.instagram.com/3x3kba/?gsh=c3Z3bGl4OHkdhR4</a>

-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총액)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II

## 사업내용

### 1. 사업수행지침

#### 가. 인력 구성·운영

- 과업수행자(용역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제안서에 표기한 참여 인력으로 사업총괄 책임자(PM)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조직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이력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협회의 문의 또는 질의에 신속히 응답해야 하며, 협회가 대면 회의를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한다.
- 협회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PM 및 참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PM은 협회의 허가 없이 투입 용역을 교체할 수 없다.

- 4) 과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 사유를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이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 5) 참여 인력 및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

## 나. 과업조건

- 1) 과업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의 준용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을 과업기간(계약기간)내 협회에 납품하여야하며 보안을 유지해야한다.
- 3) 협회에서 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특허, 상표등록 등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4) 사업 범위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있어 상호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에 따라 해결하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회에서 결정한다.
- 5)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협회에 보고한다.
- 6) 과업수행자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회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와 과업 수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손해를 배상한다.
- 7) 과업수행자의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협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손해를 배상한다.
- 8)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회가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협회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한다.
- 9)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해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및 과업 수행을 통해 취득·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협회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다. 과업의 변경

- 1) 협회는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용역 목적 및 용역범위 내에서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협회의 승인 하에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3) 본 계약의 과업변경 조건은 다음의 경우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용역 범위와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협회와 조정한다.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대회 개최 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 기타 협회의 특별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

#### **라. 계약의 해지**

-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7일의 시정기간을 거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협회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 과업 수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 협회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 제안서에 제시된 투입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과업수행자의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마.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등**

- 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과 사용 및 특허권, 저작권 등 일체의 성과품 및 지식재산권은 협회에 귀속되며 협회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또한,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종료 시 협회에 전부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과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협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이는 유효하다.
- 3)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행사로 인해 협회가 본 계약상 산출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을 소유 및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협회의 선택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3자로부터 동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동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정 또는 교체, 신규 제작하여야 한다. 단, 수정 또는 교체, 신규 제작된 산출물은 종전과 동등 이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과업수행자는 협회가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산출물의 내용을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정 또는 교체, 신규 제작하지 못하여 협회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법령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즉시 중지할 수 있다.

## **바. 사업 보안 사항**

- 1)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한다.
  - 사업수행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사업수행 관련 정보(내용, 결과) 등에 대한 보안조치 등
- 2) 과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제반 정보에 대해 기밀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 과업수행 성과보고**

- 1) 사업 추진 중에 생산된 각종 산출물, 보고서 등은 계약 시 정한 사업 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전 정기보고를 진행하여 과업 수행사항을 보고하고 협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해 협회가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 또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아. 최종목적물(협회가 요청한 모든 성과물) 납품**

- 1) 최종목적물은 기한 내 납품하되, 협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승인을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하자(오타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는 재납품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자. 하자보수**

- 1) 본 사업기간동안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영상물 및 납품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계약 종료 후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산출물에 대해 무상으로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 **차. 기타사항**

- 1)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 2) 본 사업수행지침은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3) 제안사가 협회와 협의하여 작성/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2. 사업세부내용

구분	세부추진내용
콘텐츠 제작 및 촬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카드뉴스 등 인스타그램 업로드용 이미지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 주관 3x3 대회별 최소 4건 이상 제작</li> <li>· 기타 3x3 관련 이미지 콘텐츠 4건 이상 제작</li> </ul> </li>   <li>2. 협회 주관 3x3 대회별 영상 콘텐츠 최소 2개 이상 제작 및 업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영상, 하이라이트, MVP 인터뷰 등</li> <li>·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업로드용 솟폼 콘텐츠 별도 제작 (대회 당 2건)</li> <li>· 각 영상별 챕네일 이미지 제작</li> </ul> </li>   <li>3. 3x3 국가대표팀 관련 영상 콘텐츠 최소 3개 이상 제작 및 업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대표팀의 국내대회 참여 콘텐츠(숏폼 등)</li> <li>·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업로드용 솟폼 콘텐츠 별도 제작 (대회 당 3건)</li> <li>· 각 영상별 챕네일 이미지 제작</li> </ul> </li>   <li>4. 3x3 관련 콘텐츠 및 기획 영상(다큐, 시리즈물 등) 제작 및 업로드</li> </ol>
채널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 관리            (콘텐츠 업로드 및 게시물 댓글 관리 등)</li> <li>2. 콘텐츠 관련 반응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li> </ol>
실무자 회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콘텐츠 기획 내용 협의</li> <li>2. 과업 체크리스트 및 업무보고</li> </ol>
결과보고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운영 현황 결과보고서 제출</li> <li>2. 콘텐츠별 조회수, 노출수 등 채널 사용자 반응 분석보고서 제출</li> <li>3. 모든 이미지 및 영상 제작물을 외장하드 및 웹하드를 통해 제출</li> </ol>

\* 사업 운영 중 콘텐츠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1. 일반사항

- 가.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서는 안되며, 선정된 업체는 협회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나.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다. 협회의 추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할 수 없다.
- 마. 제출된 제안서의 누락과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아. 기술평가(PT)시 제출된 제안서 그대로 발표를 진행하며 제안서의 변경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 2. 제안서 작성지침

- 가. 제안서 내용에는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에 요구되어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수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다. 제안서는 제시된 과업에 따라 작성하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과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을 담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라. 제안내용을 보증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그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 마.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분량은 60페이지 이내로 제한(표지, 간지 페이지 등 포함)하며 A4 크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용지의 사용이 가능하다.
- 바.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번호를 붙이고, 페이지 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술한다.
- 사. 사업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100% 전담 가능자를 인선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실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아.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협회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자.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성 항목	세부항목	주요내용
I. 제안사 기본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2. 최근 3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SNS채널(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운영콘텐츠 제작 실적 중심 - 성과 지표(조회수, 구독자 증가 등) 필수 기재
	3. 사업 전담참여인력 현황	- 조직 및 인력현황 등
II.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2. 사업 추진방향 및 수행전략	- 정량·정성 지표 제시
	3. 기대효과 및 비전	-
III. 사업수행방안	1. 연간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방안	- 연간 운영 로드맵 - 협회 주관 대회·대표팀 관련 콘텐츠 전략 및 예시 - 대표 콘텐츠 상세 기획안
	2. SNS 채널운영 및 홍보방안	- 협회 3x3농구 공식 채널 운영 및 홍보(홍보)전략 - 콘텐츠 확산을 위한 홍보방안 - 핵심 타겟 설정 및 공략 방안
	3. 3x3 채널만의 디자인 구축	- 3x3농구 인스타그램 채널 디자인 구축방안 - 2026시즌의 3x3농구 유튜브 채널의 대표 썸네일 제작
	4. 기획 콘텐츠 자유 제안	- 협회 브랜드 및 채널 성장이 가능한 콘텐츠 제시
IV. 사업관리	1. 사업 수행 일정 및 보고 계획	-
	2. 위기 대응 및 리스크 관리 방안	- 맷글·저작권·보안 등
	3. 성과 측정 보고 및 사후 관리 방안	-
V. 기타사항	1.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및 추가 제안사항	-

※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상기 목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1. 사업자 평가 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한 도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15)	소계	15
		경영상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5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완료 실적 *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제안서 포함), 수행실적증명서 [별첨3] 필수 제출.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10
		소계	65
		사업목적 및 방향 - 사업 목적 부합성 - 사업과제 반영수준 - 과업내용 및 3x3농구(농구종목) 이해도	10
	정성적 평가분야 (65)	이행절차 및 과업활동 - 연간 콘텐츠 제작 방향 및 채널 운영 능력 - 협회 보유 3x3농구 SNS를 연계한 세부 홍보 방안 - 기획 콘텐츠 제안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3x3만의 디자인 방안 - 추가 제안사항 실효성 및 적합성 - 포트폴리오 기반 제작 역량 평가	45
		사업 관리 및 지원 - 댓글, 커뮤니티 등 효율적 채널 운영 등 과업 및 매체 관리 전반 - 위기대응 및 문제해결 능력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운영조직 구성의 적정성 -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합리성 - 참여인력 전문성	5
		입찰가격 평가(20) 제안 (입찰가격)	20
계			100

## 2. 기술부문(정량) 서류평가 세부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경영상태	<b>신용평가등급</b>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 AA-	A1	①의 AA+, AA° ,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 B-	B-	①의 B+, B° ,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3		
수행실적	구 분	농구종목 실적포함 3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0건	10
	배 점	10	8	6	4	점수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조회)회사(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및 발급한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제출(해당 서류가 아닐 시 미제출 간주)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유사 사업 용역 계약(농구 또는 기타 스포츠종목) 1건의 준 공금액이 삼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의 것만 인정

## 1. 협상적격자 선정

-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다.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참가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라.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마.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2. 협상기준 및 절차

-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절할 수 있다.
- 나. 협회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마. 협상완료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의 100분의 10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바. 기타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른다.